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5-84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06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(2728)

- 1. 기술개발자
 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: ①디엘이앤씨㈜(박상신), ②㈜택한(문종훈),

③㈜에이치앤드에이치엔지니어링(김영호)

- 나. 전화번호 : ①02-2011-7114, ②070-8844-0640, ③02-6177-1516
- 2. 명칭 : 슬라임 제거 가능한 선단지지판을 이용한 마이크로파일 공법
- 3. 내용요약

〈분야〉

건축 > 기초 > 기타 기초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슬라임 제거 가능한 선단지지판을 이용한 마이크로파일 공법에 관한 것으로, 파일의 선단에 나사결합되는 선단지지판은 석분 배출구와 배출유도돌기가 형성되어 선단의 슬라임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, 파일의 두부에는 콘크리트 유동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통과구가 형성된 지압해드가 나사결합된다. 상하로 연결되는 파일들은 외부에 간격재가 돌출 형성되어 파일의 중심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기능 커플러에 의해 결합된다.

<범위>

선단 슬라임을 제거하는 선단지지판이 선단에 결합되고, 콘크리트 유동이 가능한 지압헤드가 두부에 결합되며, 간격재의 역할을 겸하는 복합기능 커플러에 의해 파일들이 연결되는 마이크로파일 공법

- 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59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 - 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 - 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 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 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 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